

[] 폐기물부담금
[]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

문서번호:

수신:

폐기물부담금액[] 재활용부과금액[]	반환 결정금액	반환 결정일자	반환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[] 재활용부과금[]을
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인